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

2024. 3. 20

환 경 부

목 차

I. 사업개요	1
II. 사업 세부내용	3
III. 충전시설의 설치	7
IV. 충전시설의 운영	9
V. 보칙	12

1. 목적

-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국가로부터 자금을 보조받고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단,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따르며, 그 외 어구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환경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해석을 따름

3.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등)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관리
 - 충전기 보조금 집행 업무 수행
 - 사용요금 책정에 관한 사항 등
- (사업수행기관)
 - 충전시설 제품 등록
 -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 설치공사
 - 충전시설 운영·사후관리

4. 사업추진체계

-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름

1. 정의

- ① “전기이륜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함
- ②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란 제1항에 따른 전기이륜차 중 배터리 교환을 통해 전기를 충전하는 이륜차의 충전시설로, 전기이륜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해야 함
- ③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5항에 따라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한 전산망을 말함
- ④ “사업수행기관”이란 전기이륜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함
- ⑤ “불편민원신고센터”란 충전기의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을 충전기 사용자로부터 접수하고 해당 충전기 운영기관에 송부하여 조치하게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충전기 이용에 대한 불편민원을 총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함

2. 지원대상

-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름

3. 사업수행기관 자격기준

- 충전시설 이용 현황(사용량, 회원관리, 고장접수 등) 등을 운영시스템으로 별도 보유·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바일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 향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충전시설 이용현황 등이 연계 가능해야 함

-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전기이륜차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및 배터리팩을 안정적으로 제조 또는 공급받거나, 제조·공급 및 지속적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추후 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사업자
- ※ 단독으로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표사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4. 지원금액

- 동일 장소에 설치 시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

설치 기수	1기	2~3기	4기 이상
1기당 최대 지원 금액(만원)	1,000	900	800

- ※ 단, 1기당 8구(배터리팩 슬롯수) 이상이어야 하며, 8구 이상의 경우 8구당 1기로 간주함(예: 8구 이상~15구 이하 1기, 16구 이상~23구 이하 2기)
- ※ 설치비용은 충전기 구입·공사비(한전불입금 포함), 부대설비(볼라드, 스토퍼)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표준)으로 고시된 공용 교환형 배터리팩(KSR6100-1~4), 충전시설(KSR6300-1)에 적합한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보조금의 100%를 지급하고,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보조금의 70%만 지급
-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5. 지원조건

- 충전시설 5년 이상 운영·유지·관리해야 함
- 충전기는 전기이륜차 사용자가 특별한 제한없이 사용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출입자 확인 및 승인 절차가 없는 상태)
 - ※ 주차장 등에 설치할 경우, 차단기가 있더라도 충전기 사용자가 별도 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하고, 고장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충전기 이용 현황(충전소별 사용량, 고장 접수 및 수리 현황 등) 및 운영 관련 정보를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위치 및 상태정보 등을 연계하여야 함
 - ※ 세부 연계 정보는 환경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름
- 보조금 지원 충전기와 호환되는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기준(국토교통부) 및 환경기준(환경부)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 ※ 환경부 보조금 대상 여부는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 배터리팩의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을 따르며, 전자파 적합성 시험은 KS X 3124을 따르고, 관련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충전시설은 안전인증기준이 마련된 경우, 인증을 필한 제품이어야 함(KC인증서 등 제출)
- 그밖에 충전시설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함

6. 사업수행기관의 제재사항

<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 별도의 사유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승인 없이 충전시설 설치기간(4개월)을 초과하거나 미설치(또는 취소)한 경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위치 및 상태정보 등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충전기에 대한 위치 및 상태정보를 3일간 연속으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단, 재해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
- 응대서비스(콜센터 등) 운영, 고장신고 조치, 배터리팩 관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최근 1년간 3회 이상(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국민신문고, 불편민원신고센터로 접수되는 건에 한함)으로 위반하는 경우
- 고장민원 접수 및 사업자 통보일 이후 3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포함) 보수 조치착수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기관이 환경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시정 요구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보조금 환수 >

- 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과 협의하지 않은 타 기관 보조금 사업*에서 중복하여 지원받은 사항이 적발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충전기 보급사업

1. 기본원칙

-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관련 국가기술표준 준수를 장려함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 설치 시 보조금 대상 여부를 관련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하며, 설치공사 개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 설치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53조의2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충전시설과 관련된 국가표준
 - 기타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
-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및 보급계획 물량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사전 조사

- 사업수행기관은 설치지점의 충전시설 설치 여건을 사전에 조사해야 함
- 설치지점에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의 수, 타 사업자의 충전시설 설치계획과의 중복 여부, 여유 전력, 관련 법령 등 사전에 파악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여 충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함

3. 현장 조사

- 사업수행기관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충전 수량, 설치, 전기 인입 및 주차 가능 구역 등을 결정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주변 환경, 전력공급 여건 등 「2024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적절한 설치 위치를 정하여야 함

4. 설치 예정 장소 선정

- 사업수행기관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설치장소에의 충전시설 설치 관련 동의를 구하는 경우, '3.현장 조사'에 따라 그 결과를 부지 소유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5. 설계도서의 작성

- 사업수행기관은 원활한 충전시설 설치작업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서, 공사비 내역서 등 「2024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 [별표 5]에서 정하는 내용에 준하여 설계도서에 기재하여야 함

6. 충전시설 설치공사 및 검사

- 사업수행기관은 작성한 설계도서와 공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2024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 [별표 6]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충전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수행기관이 「2024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 [별표 6]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충전시설 설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1. 기본원칙

- 사업수행기관은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함
-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충전시설 소유자 및 사업수행기관은 최소 5년간 해당 충전시설을 운영·관리 하여야 함
-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화재, 건물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40%	30%	20%	10%

- 사업수행기관은 5년 이내 충전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경우 다른 사업수행기관으로 운영권을 양도하여야 함
 - ※ 5년간의 충전시설 운영·관리 이후에도 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의 관리 의무는 사업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수행기관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시설의 이용정보 및 상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운영신고

- 사업수행기관이 충전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운영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충전시설 설치지점의 명칭
 - 충전시설 설치지점의 좌표(위도, 경도)
 - 충전시설 사용요금
 - 기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요청하는 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운영 신고한 충전시설을 고장 등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충전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함

3. 위치 및 상태정보 연계

-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함
 1. 충전시설 위치(주소, 위도·경도), 상태정보, 이용 가능자 범위
 2. 충전기유형, 충전소명, 충전시설기기번호, 충전일자 및 시간
 3. 이용가능 배터리 수, 배터리별 충전상태
 4. 일별, 사용자별 배터리 교환횟수 및 충전 전력량(kWh)
 5. 충전시설 사용요금
-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사업수행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4. 유지·보수체계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에 비상연락처를 부착하는 등 충전시설 고장 시 이용자가 고장사실을 인지·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 이용자의 고장신고 또는 기타 이용문의 대응을 위해 24시간 민원 응대서비스(콜센터 등)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의 배터리팩이 75%이상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예: 충전시설 슬롯수가 8구인 경우 6개 이상의 배터리팩이 슬롯에 구비)
- 사업수행기관은 콜센터 등에서 고장신고를 접수할 경우 지체 없이 (48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하여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점검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충전시설 수리는 현장에 출동한 즉시 조치를 해야 하며, 부품의 교체 등 불가피한 경우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5. 정기점검

- 사업수행기관은 운영 중인 충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정기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 실적(정산내역서 포함)을 당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기관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충전시설을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사업수행기관의 충전 시설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이 규정 및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시정요구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충전기 설치(예정)지점 내역

연번	충전소명	설치지역 ^{주1)}	설치유형 ^{주2)}	주소	설치대수	부지형태 ^{주3)}	부지소유자	특이사항
		시/군/구						

주1) 설치지역 : 시/군/구 단위까지 작성

주2) 설치유형 : 충전기 예상수요 및 설치목적에 따라 ①배달, ②렌탈, ③통근 표기

주3) 부지형태 : 설치부지의 사용 형태에 따라 ①자가, ②임차 표기

주4) 부지형태가 “②임차”일 경우 충전기 설치·이용 승인서 첨부 필수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	
설치예정지점에 대한 공사 인·허가 또는 부지제공자의 승인을 득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충전기 사용을 위한 접근 시 주변 교통흐름이나 보행자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예 ☐ 아니오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설치예정 충전기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에 제한이 없는가?	☐ 예 ☐ 아니오
설치예정지점 인근에 전기이륜차 사용 수요확보가 용이한가?	☐ 예 ☐ 아니오
보조사업 대상 충전기 설치를 통해 전기이륜차 사용자 수요나 충전서비스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주유소, LPG 충전시설 등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만족하는가?	☐ 예 ☐ 아니오
설치예정지점이 분진, 부식성 가스, 폭발성 가스가 생성되거나 체류가 없는 장소인가?	☐ 예 ☐ 아니오
침수, 빗물 합류 등 강우·강설에 의한 영향이 없는가?	☐ 예 ☐ 아니오

※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는 본 보조사업 신청에 앞서 충전기 사용 안전성, 사업 타당성, 보조사업 취지 등을 만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항목별로 검토·체크 후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